

#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의 안 번호	3434
-----------	------

이봉준 의원 (국민의힘, 동작구1)

- 정부는 기존 ‘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’가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책임성과 이행력 제고 등을 이유로, ‘25년 11월 명칭을 ‘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’ 및 ‘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’로 각각 변경하고,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와 지방의회의 시정 및 개선 권고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을 개정함
- 이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‘서울특별시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’를 ‘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’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의회의 서울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고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- 주요내용
  - 가. 위원회 명칭 변경(안 제8조제3항, 제9조제3항,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10조)
  - 나.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시의회의 시정·개선 권고 규정 신설(안 제9조제4항)
  - 다. 위원회 위원에 장애인 추가(안 제10조제5항)
  - 라. 기타 정부 조직개편 사항 반영 및 용어 정리
- 관계 법령 :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-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